

수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56882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백지예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갑 제1호증(차용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위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로 발급받았지만 차용증 작성일

무렵에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2)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의 배우자인 망인이다. 3) 원피고가 2022. 9. 6. 통화할 당시 ‘원고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다른 채무로 담보만 설정되어 있지만 았았다면 이미 설정해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갑 제7호증 3쪽), 일부러 내(피고)가 형수님(원고)네 돈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5쪽),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뭐 안 해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해 드리는데(6쪽)’라고 말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듯이 말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2011. 1. 1.부터 2012. 4. 4.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2022.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금액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정룡